

#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4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8. 10. 7.  
제출자 : 달성군수



## 1. 의결주문

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 
의결한다.

## 2. 개정이유

-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 
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관련조례의 보완을 통해
-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 
여건을 조성하고
-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 정립 및 국민화합 도모

## 3. 주요내용

- 지방공무원법 제51조(친절·공정의 의무)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 
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  
하도록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 명시(안 제5조제3항 신설)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규 : 「지방공무원법」 제51조(친절·공정의 의무)

##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중 “친절, 공정”을 “친절”로 하고,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 (친절·공정)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,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, 친절·공정하고 신속·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</p>	<p>제5조 (친절·공정)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,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, 친절하고 신속·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</p>
<p>②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</p>